

# 서울특별시 문학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(이종환 의원 발의)

|          |    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<br>번호 | 861 |
|----------|-----|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05월 30일

발 의 자: 이종환 의원(1명)

찬 성 자: 강석주, 경기문, 고광민, 곽향기, 김경훈, 김규남, 김동욱, 김영옥, 김영철, 김용일, 김용호, 김원태, 김재진, 김지향, 김태수, 김형재, 김혜영, 남궁역, 남창진, 문성호, 박상혁, 박·석, 박영한, 박춘선, 서상열, 서호연, 소영철, 송경택, 신복자, 아이수루, 옥재은, 유만희, 유정인, 유정희, 윤기섭, 윤영희, 윤종복, 이병윤, 이상욱, 이종태, 이효원, 임춘대, 정지웅, 최민규, 최유희, 최호정, 허·훈, 홍국표, 황철규 의원(49명)

### 1. 제안이유

- 비영리법인, 문학단체 지원 사업의 대상을 구체화하는 한편, 「문학진흥법」에 따라 문학진흥 및 국민의 문학 향유를 위하여 문학 관련 교육이나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문학 교육을 활성화하고자 함.
- 서울시 문학진흥 및 서울시 소유 문학 관련 시설 관리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민간의 전문기술을 활용하고 시민, 문학단체의 수요에 보다 면밀히 대응할 수 있도록 조례에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문학단체 지원 사업의 대상을 구체화하고, 학술 활동 지원 및 문학 교육 단체 지원을 명시함(안 제5조).

나. 관련 업무에 대한 위탁 근거를 마련함(안 제10조).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문학진흥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
## 서울특별시 문학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문학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5조(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한 지원)

- ① 시장은 문학진흥이나 문학 관련 학술 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, 단체의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- ② 시장은 문학진흥을 위하여 관계 기관, 문학 학계 및 관련 학회 등의 연구 및 학술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.
- ③ 시장은 문학진흥 및 국민의 문학 향유를 위하여 문학 관련 교육이나 그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10조를 제11조로 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(사무의 위탁) 시장은 제3조, 제5조 등에 따른 문학진흥 사업과 시 소유 문학 관련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학 관련 법인·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| 현 행   | 개 정 안   |
|---|---|
| <p>제5조(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한 지원) 시장은 법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주된 소재지를 두거나 서울특별시에서 주된 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, 문학단체, 관계 기관 및 관련 학회 등을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| <p>제5조(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한 지원)</p> <p>① 시장은 문학진흥이나 문학 관련 학술 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, 단체의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</p> <p>② 시장은 문학진흥을 위하여 관계 기관, 문학 학계 및 관련 학회 등의 연구 및 학술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③ 시장은 문학진흥 및 국민의 문학 향유를 위하여 문학 관련 교육이나 그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.</p> |
| <p>제10조(생 략)</p>  | <p>제10조(사무의 위탁) 시장은 제3조, 제5조 등에 따른 문학진흥 사업과 시 소유 문학 관련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학 관련 법인·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</p> <p>제11조(현행 제10조와 같음)</p>  |